

# 제28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

'12. 8. 30(木)

규제개혁위원회

## 제28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

- 일 시 : '12. 8. 30(목), 14:00
- 장 소 : 9층 대회의실(916호)
- 참석자 : 14명
  - 김용담 민간위원장 (주재)
  - 민간위원 (12명)
    - 이병진, 조원철, 김경수, 김태준, 배희숙, 사공진, 박통희, 백윤기, 이명선, 이영신, 이학태, 홍은주 위원
    - \* 불참 : 김주훈, 노명선, 박영일 위원
  - 정부위원 (1명)
    - 국무총리실
    - \* 불참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지식경제부, 공정거래위, 법제처
  - 안전부처
    - 중소기업음부즈만 (김문겸 중소기업음부즈만)
    - 방통위 (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)
    - 복지부 (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)
- 안 건

의안번호	상정기관	의안명	구분
2012-406	국무총리실	중소기업 음부즈만 2012년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실적	보고안전
2012-405	방통위	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안	의결안전
2012-399	복지부	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	의결안전

의안 번호	2012- 405	의안명	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안
내용/ 결과	<p>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위에서 제시한 고시안(1안)과 대안(2안) 모두 절차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요건을 갖춘 안으로 평가됨</li> <li>○ 내용적 측면에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영렙과 민영렙의 지원방송사가 결정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두 미흡한 점이 있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시안은 단순히 현행지원 구조를 반영한 안으로 ,</li> <li>- 공영과 민영렙간 구분에 따른 방송사 지원 측면, 다수의 중소방송사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2안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임</li> </ul> </li> <li>○ 그러나, 규개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으므로, 상기 규개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통위에서 최종적으로 고시(안)를 확정할 필요</li> </ul>		
주요 발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사간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질문이 있었으나, 중요규제로 판단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i) 결합판매 매출 규모 ii) 참여하고 민감한 이해관계 iii) 고시로 인한 렙과 방송사간 권리관계 형성 등을 감안</li> </ul> </li> <li>○ 1·2안 모두 절차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춘 안으로 판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러나, 일정한 기준·원칙에 의해 산정되지 못한 점에서 두 안 모두 미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1안) 단순히 현행 지원 구조를 반영한 안으로 보임</li> <li>· (2안) 공영·민영렙 구분에 따른 지원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, 보다 많은 방송사를 만족시킴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규개위는 규제외 절차적 타당성, 합리성(ex:기준)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, 이러한 전제하에 특정 안을 선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</li> </ul>		

의안 번호	2012-399	의안명	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
내용/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(계속심사)</li> <li>- 간호인력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(업무영역, 수요예측, 양성체계 등), 해당 규제의 법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</li> </ul>		
주요 발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,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(특정 학력)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</li> <li>○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면 시장 수요를 이를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 와도 불일치</li> <li>○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,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</li> <li>○ 규제측면이나 법 형식논리상 불합리 하지만 민간 양성학원,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, 고졸 취업 기회 박탈, 개인·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음</li> <li>○ 복지부의 '간호조무인력 양성체계'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</li> <li>○ 개정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동의하되, 일정 기간 내 복지부에서 양성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일몰 또는 조건부로 설정</li> <li>○ 규제 측면에서 불합리한 법안이므로 철회하고, 사회적 혼란 및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양성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필요</li> <li>○ 법제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문 자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</li> <li>○ 간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방향(주요 내용, 정책결정 시기 등), 해당 조문의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 후 판단</li> </ul>		

